



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.

www.namwon.go.kr

제27호 2018. 6. 8(금)

선 람	기관의 장

공고

- 남원시 공고 제2018- 1003호 남원시 방재성능목표 공표 ----- 1
- 남원시 공고 제2018- 1040호 공시송달공고(2018년 5월 수시분 지방소득세 공시송달 공고) ----- 3
- 남원시 공고 제2018- 1044호 공시송달공고(2018년 3월 지방소득세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) ----- 4

회 람	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남원시 공고 제2018 - 1003호

남원시 방재성능목표 공표

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의4에 따라 「남원시 방재성능목표」를 설정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8년 6월 11일

남 원 시 장

- 1. 목 적 : 도심지 침수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내 방재시설이 통합 방재성능을 발휘토록 방재성능목표를 설정 공표함.
- 2. 근 거 :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의4(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·운영)
- 3. 방재성능목표

지역명	강우지속기간		
	1시간	2시간	3시간
남원시	80mm	105mm	125mm

4. 방재성능목표 적용(운영) 대상

-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시행령 제14조의6제1항제1호에 따라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내에 설치된 다음 각 호의 방재시설
 - 가. 「소하천정비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하천부속물 중 제방
 - 나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6호마목에 따른 방재시설 중 우수지(遊水池)

- 다. 「하수도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중 하수관로
- 라.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시행령 제55조제1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방재시설의 유지·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

5. 방재성능목표 적용(운용)

- 도시지역 내 기 설치된 방재시설(하수관로, 배수펌프장, 우수유출저류시설, 저류지, 우수지, 소하천 등)에 대해 방재성능목표를 적용하여 홍수처리 능력 등 방재성능을 평가시 적용
- 도시지역 내 택지개발 등 새로운 도시기반 계획수립 시 설계기준에 따라 계획한 방재시설의 성능이 방재성능목표에 부합하는지를 평가시 적용
- 방재성능목표를 적용하여 홍수유출량 산정
 - 홍수유출량 산정은 합리식, RRL 모델, ILLUDAS 모델, SWMM 모델을 활용하고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적용

6. 방재성능목표 적용일 : 공고일 부터

남원시 공고 제2018 - 1040호

공 시 송 달 공 고

2018년 5월 지방소득세 고지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8. 6. 15

남 원 시 장

- 1. 제 목 : 2018년 5월 수시분 지방소득세 공시송달 공고
- 2. 공고기간 : 2018. 6. 15 ~ 2018. 6. 29
- 3. 납부기한 : 2018. 6. 30

2018년 5월 수시분 지방소득세 고지서를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어 이를 공시송달하오며, 공시송달기간이 도래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고지서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.

4. 공시송달내역 : 붙임

(단위:원)

납세번호	납세자번호	개인(법인)명	세액	공고사유	간주납기
140002 2018 05 2 590 000074	751228-***** **	이**순	765,890	폐문부재	20180630

남원시 공고 제2018 - 1044호

공 시 송 달 공 고

2018년 3월 지방소득세 독촉고지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이사감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8. 6. 15

남 원 시 장

- 1. 제 목 : 2018년 3월 지방소득세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
- 2. 공고기간 : 2018. 6. 15 ~ 2018. 6. 29
- 3. 납부기한 : 2018. 6. 30

2018년 3월 수시분 지방소득세 독촉고지서를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이사감 사유로 반송되어 이를 공시송달하오며, 공시송달기간이 도래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고지서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.

- 4. 공시송달내역 : 붙임 (단위:원)

납세번호	납세자번호	개인(법인)명	세액합계	공고사유	간주납기
140002 2018 03 2 310 000040	331220-*****	추**임	1,563,990	기타	20180630
140002 2018 03 2 400 000054	610301-*****	박**준	32,830	이사감	20180630
140003 2018 03 2 350 000019	211314-*****	신**계**발	2,881,540	이사감	20180630